

기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

시행: 2022. 3. 30.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(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)에 따라 본교의 기금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하고,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원,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, 제2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

1.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·직원 및 재학생(단, 총장, 행·재정부총장, 재무처장 및 재무회계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재학생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학생대표로 한다.)

2.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

3. 그 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

③ 위촉직 위원은 경제, 경영 또는 금융 관련 전공 본교 재직교수 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4항 각호의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이 아닌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금융정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.

제3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및 중임할 수 있다.

제4조(운영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.

1. 매 회계연도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

2.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

3. 그 밖에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·운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③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 및 의결)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간사) ① 위원회의 간사는 재무처 직원으로 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한다.

제8조(관련부서의 협조)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관련부서에 기금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9조(비밀유지 의무 등)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 중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는 직무상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.

제10조(수당 등 경비의 지급)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사무관장) 위원회의 사무는 대학 재무처에서 관장한다.

제12조(기타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
<부 칙>

본 규정은 2019년 4월 5일 부로 시행한다.

<부 칙>

본 규정은 2021년 7월 19일 부로 시행한다.

<부 칙>

본 규정은 2022년 3월 30일 부로 시행한다.